

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2일	
신고인	상호(명칭)			설립연월일			
	성명 (대표자)			생년월일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		
	사업의 종류						
변경하려는 사항		변경 전		변경 후			
변경사유							

「해운법」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한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(지방해양수산청장)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(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, 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1부 2.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(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, 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질 차

